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
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2022. 8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촌정책과)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

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사전 협의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18527호, 2021. 11. 30. 공포, 2022. 12. 1. 시행)됨에 따라,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절차,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약칭 조문과 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는 사전 협의 대상 사업 선정시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
장에게 통보하고,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은 2개월 이내에 이행계획
서를 제출하는 등 통보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(안 제2조의3 신설)
- 나. 위원회 약칭 조문을 정비하고, 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
화함(안 제3조, 안 제6조, 안 제6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생략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3(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
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
다)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선정할 경우
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정사유, 개선 요청 사항과 법 제9조의
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(이하 “이행계획서”라 한다) 작성방법 등을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
의 장은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작성
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 개선사항
2. 예산 조정 사항 및 계획
3. 법령 등 제도 개선 사항
4. 추진 일정

5. 그 밖에 위원회에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

③ 위원회는 이행계획서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에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이행계획서를 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 중 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10조제7항에”를 “제10조제8항에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“제10조제3항제2호에”를 “제10조제4항제2호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3(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선정 한 경우 선정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정사유, 개선 요청 사항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(이하 “이행계획서”라 한다) 작성방법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

제3조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
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

1. 사업 개선사항
2. 예산 조정 사항 및 계획
3. 법령 등 제도 개선 사항
4. 추진 일정
5. 그 밖에 위원회에서 개선을
요청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
③ 위원회는 이행계획서의 심의
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6
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에
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
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
수 있다.
④ 위원회는 이행계획서를 심의
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
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
통보하여야 한다.
⑤ 제4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
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
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
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
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3조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
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

등)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제6조의2(위원의 해촉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

등) 위원회의-----

-----.

제6조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10조제8항에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위원의 해촉) ① ----- 제10조제4항제2호에 -----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519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462